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0. 7. 1)에 따른 용어 재정비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증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용어 재정비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다.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 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확정

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 3)

-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 감면을 확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 협의 : 해당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11. 1. 24 ~ 2. 13(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종전 제9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율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2조제6호, 제2장제2절의 제목, 제11조의 제목,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각각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50개”를 “30개”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물류시설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평창군 <u>재래시장</u>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사항</u></p> <p>3. ~ 5.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6.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p> <p>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p> <p>8.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9. 그 밖에 <u>재래시장</u>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u>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p> <p>-----</p> <p>-----</p> <p>-----<u>전통시장</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u>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u></p> <p>7.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감면율에 관한 사항</p> <p>8.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p> <p>9.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p> <p>10.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11. 그 밖에 <u>전통시장</u>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과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도 상인으로 본다.
2. “시장활성화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 4. (생략)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 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 9. (생략)

제2조(정의) -----

- .
1. -----
-----상권활성화구역-----

-----.
 2. “상권활성화구역”-----

-----.
 3. ~ 4. (현행과 같음)
 5. -----

-----30개-----
-----.
 6. -----

-----상권활성화구역-----
-----.
 7. ~ 9.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시장활성화구역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제2절 상권활성화구역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 상권활성화구역-----

-----.

②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

② 상권활성화구역-----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상권활성화구역-----

-----.

② ----- 상권활성화구역-----
-----.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상권활성화구역-----

-----.

제30조(위탁관리) ①----- 상권활성화구역 -----

-----.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0조의3(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상권활성화구역-----
-----.
② ~ ④ (현행과 같음)

<p>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물류시설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	---------------------------------------------------------------------------------------------------------------------

관계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0조 삭제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을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